

[학칙시행세칙 신·구조문 대조표]

구 분	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제6조(편입학)	① <생략> ② 편입학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2학년 편입학(2학년 1학기) 가.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졸업(예정)자 나. 4년제 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수료자(35학점 이상 취득) 다. 전문대학 제적 또는 자퇴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1학년 2학기 이상 수료자(35학점 이상 취득) 라.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 취득자 중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2. 신설	① <생략> ② 편입학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2학년 편입학(2학년 1학기) 가.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졸업(예정)자 나. 4년제 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수료자(35학점 이상 취득) 다. 전문대학 제적 또는 자퇴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1학년 2학기 이상 수료자(35학점 이상 취득) 라.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 취득자 중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<u>2. 3학년 편입학(3학년 1학기)</u> <u>가.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</u> <u>나. 4년제 대학 2학년 2학기 이상 수료자(52학점 이상 취득)</u> <u>다. 전문대학 제적 또는 자퇴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2학년 2학기 이상 수료자(52학점 이상 취득)</u> <u>라.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 취득자 중 52학점 이상 취득한 자</u>	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 기준 추가
제6조의2(전과)	①~⑥ <생략> ⑦ 2년제 학과에서 3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나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. ⑧ <생략>	①~⑥ <현행과 동일> ⑦ <u>전과는 학제의 상관없이 가능하나 3학년 전과는 동일 학제에 한하여 허용한다.</u> ⑧ <현행과 동일>	전과허용범위 개정